

제 372 호

1973. 5. 23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대 기

편집 : 공보실장 김 진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행소

전화 75-6444 · 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770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 3
◎ 고 시	
제 75 호	사료성분등목 4
제 76 호	사료성분량 고시 7
제 77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운용요강...8
제 78 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개축) 허가17
◎ 공 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제 11 호 :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공고.....17
제 96 호	망우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제 4차환지에 정지지정공고...18
제 100 호	3급전기주임기술자 면허증 갱신 18
◎ 예 규	
제 1303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상무이사승인심사기준.....20
◎ 사 령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

1973. 5. 2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70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가 농촌유류 노동인구의 고용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된 새마을공장에 대하여 지방세 법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면제와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취득세의 면제대상) 농가공산품 개발위원회 규정에 의거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마을공장을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새마을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때
- 2. 공장건물을 준공한 후 6월 이내에 농가공산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때
- 3. 새마을공장을 지정된 농가공산품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 3 조 (재산세의 감면대상) 농가공산품 개발위원회 규정에 의거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 생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공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납기개시일 현재 새마을 공장이 휴업하고 있을 때
- 2. 지정된 농가 공산품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 4 조 (재산세의 감면기간) 제 3 조의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 생산을 개시한 후의 최초 과세년도로 부터 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 5 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

처리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 6 조 (면제신청) ①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면제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천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동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새마을 공장이 준공된 것은 취득세 과세의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 시행일에 준공한 것으로 본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 호

사료성분 등록

사료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필하였 기 고시함

1973. 5. 16

서울특별시 장

다 음

- (-) 1. 사료공장명 : 천일곡산 공업주식회사 제 2 공장
- 2. 사료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15
- 3. 사료공장대표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 의 5
- 4. 사료공장 대표자 : 이 상 선
- 5. 사료성분 등록내용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 료 용 도	최 소 한		최 대 한		유효기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9-82	배합사료	생후대략 3 - 6 개월 까지	이상 16.0%	이상 2.5%	이하 10.0%	이하 9.0	73.5.9
9-83	"	생후대략 2 개월 까지	18.0	2.0	6.0	9.0	75.5.8
9-84	"	고기소전기배합사료	15.0	2.0	13.0	12.0	"
9-85	"	고기소 중기배합사료	13.0	2.0	11.5	11.0	"
9-86	"	고기소 후기배합사료	11.0	2.0	10.0	10.0	"
9-87	"	양계용농축 배합사료	16.0	2.0	4.5	13.0	"
9-88	"	양돈용농축 배합사료	16.0	2.0	4.5	13.0	"

- (2) 1. 사료공장명 : 인산농원 주식회사 사료공장
 2. 사료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촌동 203
 3. 대 표 자 : 김 영 오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 료 용 도	최 소 한		최 대 한		유효기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9-89	배합사료	부로이라 후기 완성용	이상 16.0%	이상 2.5%	이하 6.0%	이하 10.0%	73.5.9~
9-90	"	기 초 사 료	50.0	5.0	2.5	20.0	75.5.8
9-91	"	기 초 사 료	38.0	3.0	8.0	7.0	
9-92	"	배 합 사 료	16.0	2.0	4.5	13.0	

- (3) 1. 사료공장명 : 서울미원 주식회사 영등포공장
 2. 사료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629
 3. 대 표 자 : 이 휴

4. 사료성분 등록내용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 료 용 도	최 소 한		최 대 한		유효기간
			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9-93	배합사료	부화후 대략 6 주까지	이상 19.0%	이상 2.5%	이하 6.0%	이하 9.0%	73.5.9
9-94	"	" 7-12 주까지	16.0	2.5	7.0	10.0	75.5.8
9-95	"	" 13- 초산까지	12.0	2.5	7.5	10.0	"
9-96	"	" 13- 초산까지	12.0	2.5	7.5	10.0	"
9-97	"	초산후부터 대략 20 주까지	15.0	2.0	7.0	13.0	"
9-98	"	초산후대략 21-35 주까지	14.5	2.0	7.0	13.0	"
9-99	"	초산후대략 36 주이상	14.0	2.0	8.0	13.0	"
9-100	"	초산후대략 20 주까지	15.0	2.0	7.0	13.0	"
9-101	"	" "	15.0	2.0	7.0	13.0	"
9-102	"	부화후 대략 4 주까지	19.0	2.5	6.0	9.0	"
9-103	"	부화후 대략 4 주이상	16.0	2.5	6.0	10.0	"
9-104	"	" " "	16.0	2.5	6.0	10.0	"
9-105	"	" " "	16.0	2.5	6.0	10.0	"
9-106	"	" " "	16.0	2.5	6.0	10.0	"
9-107	"	양 계 용	16.0	2.0	4.5	13.0	"
9-108	"	생후대략 2 개월까지	18.0	2.0	6.0	9.0	"
9-109	"	" 2-4 개월까지	15.0	2.0	7.0	9.0	"
9-110	"	생후대략 4 개월이상의비육 돈및 8 개월까지의 씨돼지	12.0	2.0	8.0	10.0	"
9-111	"	생후대략 9 개월이 되는씨돼지	12.0	2.0	11.0	11.0	"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 료 용 도	최 소 한		최 대 한		유효 기간
			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9-112	배합사료	양 돈 용	16.0	2.0	4.5	13.0	
9-113	"	생후대략 3 개월 까지	19.0	2.5	8.0	9.0	
9-114	"	생후대략 3 - 6 개월 까지	16.0	2.5	10.0	9.0	
9-115	"	생후대략 6 - 18 개월 까지	12.0	2.0	12.0	11.0	
9-116	"	" 18 개월 이상	13.0	2.0	13.0	12.0	
9-117	"	" "	13.0	2.0	13.0	12.0	
9-118	"	고 기 소 용	15.0	2.0	13.0	12.0	
9-119	"	"	13.0	2.0	11.5	11.0	
9-120	"	"	11.0	2.0	10.0	10.0	
9-121	"	축 우 용	11.0	2.0	4.5	13.0	

◎ 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

사 료 성 분 량 고 시

사료관리법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료성분등록을 필하였기
고시 한다.

1973 년 5 월 2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 료 공 장 명 : 신촌사료주식회사
2. 사료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동 93 번지
3. 사료공장대표자 : 강 금 로

등록 번호	사료의명칭	사 료 의 용 도	사 료 의 성 분				유효기간
			최 소 량		최 대 량		
			단 백 질	조 지 방	조 섬 유	조 회 분	
6-10	젖새끼용아지 배합사료	생후대략 3 개월 까지	%이상 19.0	%이상 2.5	%이하 8.0	%이하 9.0	73.5.21 부터 75.5.20 까지
6-11	젖소중 송아지 배합사료	생후대략 3-6 개월 까지	16.0	2.5	10.0	9.0	"

등록 번호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				유효기간
			최소량		최대량		
			주 단 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6-12	젖소큰송아지 배합사료	생후대략6-18개월까지	12.0	2.0	12.0	11.0	73.5.21부터 75.5.20까지
6-13	젖소용배합사료	생후대략 18 개 월이 상	13.0	2.0	13.0	12.0	//
6-14	젖메기돼지배합사료	생후대략 2 개 월 까지	18.0	2.0	6.0	9.0	//
6-15	어린돼지배합사료	생후대략 2 - 4 개 월	15.0	2.0	7.0	9.0	//
6-16	중돼지배합사료	생후대략 4개월이상의 비 육돈및 8개월까지의씨 돼지	12.0	2.0	8.0	10.0	//
6-17	씨돼지배합사료	생후대략 9개월되는씨 돼지	12.0	2.0	11.0	11.0	//
6-18	산란초기용배합사료	부묘일러 중계용배합사료	15.0	2.0	7.0	13.0	//
6-19	농축배합사료	양계용농축사료	16.0	2.0	4.5	13.0	//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금
운용요강을 다음과같이 제정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 77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
조합사업자금운용요강

73.5.21.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요강은 중소기업협
동조합사업자금 (이하 " 자금 " 이라
한다) 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원) 이 요강에 의한 지원
자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재정자

금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 에 의한
대하금화 그회수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 3 조 (지원대상) ① 자금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서울특
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립인가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
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 이 동법
제 31 조제 1 항 (제 7 호제 외) 의 규정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
다.

② 전항의 지원대상은 조합원의 업
종별 구성의 다양성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수혜조합원이 총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4개월이상 활용치 못한 경우
2. 임원이 2개월이상 결원중인 경우
3. 지원자금이 연체중에 있는 경우
4. 부실운영으로 시정 또는 경고 조치중인 경우
5. 시장이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조 (자금지원) 시장은 조합별 지원자금한도액을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장 (이하 은행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지원비율) 자금은 총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 (지원기간) ① 운전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설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거치 4년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기간을 전 2 항의 기

간내로 정하였을 경우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용자대상선정심의 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전 2 항의 용자기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대하및용자절차) ① 은행장은 자금대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조건으로 은행장에게 자금을 대하한다.

1. 대하기간 : 5년
2. 대하금리 : 년 9% (년 2회불입)
3. 상환방법 : 5년후 일시상환
4. 분 도 :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금

② 용자절차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시장은 각 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별 한도액과 용자기간을 정하여 은행장에게 통보한다.
2. 은행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채권보전하고 대출한다.
3.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용자한도 : 10,000,000원 이내
 - 나. 용자금리 : 년 12%

다. 상환방법 : 용자기간종료 즉시
일시상환

제 8 조 (채권보전) 은행장은 조합에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사전 채권보전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금사용의 제한및회수) ①
조합은 대출된 자금을 즉시 활용
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지원된 자금이 결손금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보임원의
연대책임하에 보전하여야 한다.

③은행장은 자금이 지원된 조합에
대하여 제 3 조제 3 항의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대출된 자금을
지체없이 회수토록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후관리) ①시장과 은행
장은 자금이 지원목적에 따라 사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②은행장은 전항의 사후관
리를 위하여 관계증빙서류 또는
필요한 보고서를 징구하거나 수시
확인조사 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은행장은 지원된 자금의 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또는 연체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고) ①자금이 지원된
조합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
업완료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5 일
이내에 시장 및 은행장에게 별표
3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자금이 지원된 조합은 분기
별 추진상황보고서를 분기말로 익
월 15 일까지 시장 및 은행장에게
별표 2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
다.

③은행장은 본 자금대출 및
회수가 있을시는 시장에게 별표 4
양식으로 대출 및 회수상황을 보
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요강에 규정되
않은 사항은 상공부고시 제 9153 호
(72.9.19) 및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은행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 (1)이 요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이요강시행이전에 이미 대히및 대출된 자
금은 이요강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대히및
대출된 것으로 본다.
- (3)이요강시행이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사업자금운용요강 (서울특별
시공고제 137 호) 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수신 : 서울특별시장

197

참조 : 공업과장

제목 : 조합사업자금 배정신청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 운용요강

제 7 조 2 항 규정에 의거 동 자금을 배정받고자 별첨과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대차대조표 (또는 시산표)

3. 기타 증빙서류 건 끝

○ ○ ○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인)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 업 목 적
3. 신청금액 및 기간
4. 사업내용 (사업목포량, 수행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소요자금 명세 (산출근거)

사 업 별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산 출 기 준

6. 자금조달계획

총 소 요 액	자 체 자 금				지 원 자 금		지 원 비 율	비 고
	출 자금	전 수 금	기 타	계	정 부	시		

7. 예상효과 (생산, 판매, 수출, 군납, 단체수의 계약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8. 사업추진계획 (일정표)

9. 상환계획

10. 기타 참고사항

(1) 수출, 군납, 단체수의계약 등의 계획 및 실적을 기재

(2) 수혜조합원별 내역

(3) 기타 자금결산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별표 2」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공업과장

제목 : 사업현황보고 (분기별 보고)

당 조합에서 배정받은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배정일자 (공업 1332 -)
- 2. 배정금액
- 3. 대출일자
- 4. 대출금액
- 5. 상환일자
- 6. 상환금액
- 7. 사업집행 실적

(사업량, 사업효과를 당초계획과 대비 설명)

첨부 : 관계증빙서류 부 끝

○ ○ ○ 조 합

이 사 장

(인)

“ 별표 3 ”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공업과장

제 목 : 사업(완료) 보고

당 조합에서 배정 받은 지원 자금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기
보고합니다.

1. 배정일자 (공업 1332-)

2. 배정금액

3. 대출일자

4. 대출금액

5. 상환일자

6. 상환금액

7. 사업진행 실적

(사업량 사업효과를 당초계획과 대비 설명할것)

첨 부 : 관계 증빙서류

부 끝

조 합

이 사 장

(인)

별표 4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공업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 상황보고

귀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자금을 다음과 같이 대출 또는 회수하였기 보고합니다.

다 음 (년 월 일현재)

조 합 명	대 출 상 황				회 수 상 황		
	배정액	대출액	대출일자	회수예정일	회수액	회수일	회수일 경과된 회수액

197

중 소 기 업 은 행 장

21-15

서울특별시고시제 78 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개 축) 허가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개 축) 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3. 5. . . .

서울특별시장

1. 허가년월일 : 1973. 5.22.
2. 위치 : 서대문구남가좌동홍제천
(홍연교 - 사천교)
3. 목적 : 구획정리 지구내의 25 미터
계획도로 확보 및 하천제
방 개수
4. 규모 : 길이 : 1,630 m
폭 : 25 m ~ 6 m
5. 피허가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
좌동 32 번지 홍남토지구획정리조합
현장소장 김 영 근

6. 착공년월일 : 허가일로 부터 1 개
월 이내
7. 준공년월일 : 착공일로 부터 3 개
월 이내

공 고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11 호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공고제 7 호
(73.4.13) 에 의거 1973.5.6 시행
제 2 회 4 , 5 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다음 사람들은 시험합격
을 목적으로 부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
후 5 년간인 1973.5.6-1978.5.5 까
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였음을 공고한다.

1973. 5. . . .

서울특별시장

1. 응시자격 정지처분자 명단

직 열	응시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5 급 행정직	04339	박철선	1939.7.13	110919- 112135	중구필동 2 가 28

직역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5급 행정직	03966	김용강	1950.12.6	171213-107463	전북고창군신림면반룡리 166
"	03944	전정희	1948.11.27	171108-104795	전북정읍시영원읍신영동 389

◎ 서울특별시공고제 96 호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 4 차 환지에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망우토 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제 55 조 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도서와 같이 제 4 차 환지계획을 수립 인가 하고 환지에정지를 등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여 등법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정지공사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공작완료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사용 수익을 하게 됩니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지정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 과 및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이 공고에 따른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니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3. .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00 호

3 급전기주임기술자면허증정신 대통령령 제 6479 호(73.1.27) 로 개정된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3 급 전기주임 기술자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다음과 같이 갱신 교부함을 공고한다.

1973. 5. 21.

서울 특별 시장

1. 갱신대상 : 1973. 1. 27 이전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3 급전기주임 기술자면허증 소지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전원

2. 갱신신청 접수기간 및 시간

가. 1 차접수 및 교부 : 아래와 같이 일별 면허번호순에 의한.

(1) 면허증 갱신 신청접수 및

교부일정 (73. 6. 4-6. 25 까지)

접수교부일		신청서접수구면허번호		접수교부일		신청서접수구면허번호	
월	일	번호부터	번호까지	월	일	번호부터	번호까지
6	4	1	50	6	14	551	650
6	5	51	100	6	15	651	750
6	6	101	150	6	18	751	850
6	7	151	200	6	19	851	950
6	8	201	250	6	20	951	1,050
6	11	251	350	6	21	1,051	1,150
6	12	351	450	6	22	1,151	1,250
6	13	451	550	6	25	1,251	1,350

나. 접수 및 교부시간

(1) 신청서접수시간 : 10:00-12:00

(2) 면허증교부시간 : 15:00-17:00

다. 2 차접수기간 : 1973. 7. 26-10:00

-7.26 18:00 (1 일간)

3. 제출서류

가. 갱신신청서 (당시 연료과에서 배부) 1 통

나. 주민등록초본 1 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분에 한함.)

다. 면허증 원본 1 통

라. 사진 4 매 (3 개월이 내 촬영한
3 cm X 4 cm)

마.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1,000 원

4. 접수 및 교부장소 : 서울특별시시민홀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제 1303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43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하
는 상무이사외의 임명 승인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한다.

1. 승인심사기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44 조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연합회의의 과장급 이상으로
3 년이상, 또는 조합의 부장급
(부직제가 없는 조합은 과장급)

이상으로 5 년이상 근무한자.

다만 조합의 설립시기가 5 년
미만일때 설립과 동시 당해
조합의 위직 이상의 직에 있
었던 자는 예외로 한다.

- (2) 3 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 년
이상 근무한 자나 4 급공무원
으로서 5 년이상 근무한 자.

- (3) 정부관리기업체 과장급 또는
법인기업체 (상시 종업원 100
명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5 년이상 근무한 자.

- (4) 금융기관의 대리급 이상으로
5 년이상 근무한 자.

- (5) 영관급이상 장교로 2 년이상
복무한 후 예편된 자.

- (6)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직
에 2 년이상 근무한 자.

-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자.

- (8) 전 각호의 1 에 준하는 자
로서 서울특별시장의 특히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특별시장이 특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라고 함은 전라호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요근무 연한이 미달하는 자라도 동인이 업계의 실태가 두텁고 조합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사 령

◎ 1973 . 5 . 18

서대문구 (남부 지방행정주사 이성모
전설 파견중)
남부전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경리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영태
파견중)
경리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 (중구파견중)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진
중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새마을사회복지회관파견중) 지방행정서기 조재혁
새마을사회복지회관 근무를 명함.

중구 (성북구파견중) 지방행정서기보 하종학
성북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남궁시종
통계과 근무를 명함.

위생연구소 지방행정주사 김응숙
영등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최하진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박성훈
시민과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제2과 지방행정주사보 홍성배
시민과 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비서4급류 박장근
(환경과 겸무)
위생연구소 겸무를 명함.
단, 겸무처 근무를 명함.

◎ 1973 . 5 . 21

주택건설과 지방기계지원보 정석순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 3호규정
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농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최명식
지방공무원법제 63조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청소제 2과 지방행정사무관 장영순
농정과 농정계정에 포함.

방 호 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유 성
복직를 명함.

청소제 2 과 처리계 장애 포함.

◎ 1973 . 5 . 22

마 포 병 원 지방행정주사 윤 희 균
양노원 근무를 명함.

마 포 병 원 지방행정서기 최 중 집
마포구 근무를 명함.

마 포 병 원 지방기관수 김 영 수
아동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마 포 병 원 난방공 전 일 현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서 을 특 별 사 장